원주시 명륜1동 공고 제2022-2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2. 12. 06.

명 륜 1 동 장

1. 공고명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 불능자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자

대 상 자		세대주 성명	주 소	발급기간	공고사유
성 명	생년월일				
김*수	05.10.29.	김*아	강원도 원주시 향교길 53	2022.11.1. ~ 2023.10.31.	등기반송

3. 공고기간 : 2022. 12. 06. ~ 2022. 12. 20. (15일간)

※ 발급안내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어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합니다.
   가)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
   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이장의 확인
   다)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
3) 준비해야 할 사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3.5cm×4.5cm).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진 1장을 추가해야 합니다.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신청인 또는 신분이 확인된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등이 직접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면 등기우편료를 부담하고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위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의전화: 033-737-5749)